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16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5923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16740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지은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74,543,5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543,564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07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3. “D은 원고에게 274,54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D의 본점 주소지상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D이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 동산도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 불능되었고, 같은 법원 2019카명304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과 밝혀진 D의 재산은 자동차 1대에 불과하였다.

다. 한편, D의 본점 주소지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 개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C은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합16153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C에 대해서도 위 금액 상당의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5. 14. 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1나23361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C에 대해서도 D와 마찬가지로 위 기초사실 가.항 기재 금액의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 C은 피고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전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라는 법인의 형태만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위 회사가 C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C이 D의 배후에서 위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균, 판사 최유빈, 판사 전제균

부동산의 표시

1. 구미시 F 공장용지 43012.9m² 중 43012.9분의 5300 지분

2. 구미시 F 주식회사 G H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공장

1층 공장 1039.5m²

1층 공장(화장실) 10.5m²

3. 구미시 F 주식회사 G I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공장

1층 공장 939.9m²

1층 공장(사무실) 276.9m²

2층 공장(사무실) 266.4m²

4. 구미시 F 주식회사 G J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공장

1층 공장 655.5m²

1층 공장(화장실) 38.7m². 끝.

